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

별 표

[별표 3]

에너지진단주기(제22조의2 관련)

| 연간에너지사용량 | 에너지진단주기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만티·오·이 이상 | 1. 전체진단 : 5년 2. 부분진단 : 3년 |
| 20만티·오·이 미만 | 5년 |

비고

1. 연간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.
2. 부분진단은 10만티·오·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[별표 4]

진단기관의 지정기준(제22조의5 관련)

1. 장비

| 내 용 | 1종 | 2종 |
|--|--------|--------|
| 가.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(1) 온도 : -20℃ ~ 500℃ (2) 분해능 : 0.1℃ | 1대 이상 | 해당 없음 |
| 나. 초음파 유량계 (1) 유량 및 유속 측정 자료 10,000개 이상 저장 가능 (2) 온도 : 0℃ ~ 120℃ (3) 파이프 바깥지름 : 50밀리미터 ~ 2,000밀리미터 (4) 유속 : 0m/s ~ 10m/s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다. 디지털 압력계 0바(bar) ~ 30바(bar)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라. 데이터 기록계 (1) 기록 용량 : 512킬로바이트 이상 (2) 기록 채널 : 5채널 이상 (3) 온도측정용 감지기 : 5개 이상/대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마. 온·습도계 (1) 온도 : -10℃ ~ 60℃ (2) 상대습도 : 0퍼센트 ~ 100퍼센트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바. 연소가스 분석기 (1) 이산화탄소(CO ₂), 산소(O ₂), 일산화탄소(CO) 및 질소산화물(NOx) 측정 가능 (2) 온도 : -40℃ ~ 1,000℃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사. 표준 온도계 (1) 온도 : -50℃ ~ 350℃ (2) 한눈금의 값 : 0.1℃ | 1세트 이상 | 1세트 이상 |
| 아. 온도계 (1) 온도 : -40℃ ~ 300℃ (2) 분해능 : 0.1℃ (3) 침형 감지기 : 1개 이상/대 (4) 표면 접촉식 감지기 : 1개 이상/대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자. 고온용 온도계 -50℃ ~ 1,300℃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차. 적외선 온도계 -30℃ ~ 400℃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카. 디지털 풍속계 0m/s ~ 50m/s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타. 디지털 풍압계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
| | | |
|--|-------|-------|
| (1) 정압, 차압 측정 가능 (2) -1,000파스칼 ~ 3,000파스칼 파. 전력 분석계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(1) 삼상 측정 가능 (2) 전압·전류·역률·고조파 및 전력 적산 가능 (3)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하. 교류전력 측정기 | 2대 이상 | 1대 이상 |
| (1) 삼상·유효전력·피상전력·무효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(2) 전압 : 0볼트 ~ 600볼트 (3) 전류 : 0암페어 ~ 1,000암페어 거. 조도계 | 1대 이상 | 1대 이상 |
| 0럭스 ~ 20,000럭스 너. 회전계 | 1대 이상 | 1대 이상 |
| (1)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(2) 접촉 : 1rpm ~ 15,000rpm (3) 비접촉 : 1rpm ~ 90,000rpm | | |

2. 기술인력

| 내 용 | 1종 | 2종 |
|---|-------|-------|
|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, 금속, 화공 및 세라믹, 전기, 건축, 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| 1인 이상 | 해당 없음 |
|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열관리기사·가스기사·화공기사·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·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1인 이상 | 1인 이상 |
| 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열관리기사·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2인 이상 | 해당 없음 |
| 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2인 이상 | 해당 없음 |
| 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열관리기사·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1인 이상 | 1인 이상 |
| 바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| 1인 이상 | 1인 이상 |
| 사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 | 1인 이상 | 1인 이상 |

| | | |
|---|-------|-------|
| 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아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, 화공 및 세라믹, 전기, 건축, 에너지,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| 1인 이상 | 1인 이상 |
|---|-------|-------|

비고

1. 기술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의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한다.
2. 기술인력의 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, 화공 및 세라믹, 전기, 건축, 에너지,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.
3. 기술인력 중 기사는 동일 분야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고, 열 또는 전기 분야의 기사는 에너지진단을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일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.
4. 1인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종류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.
5.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제2항·별표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진단기관 지정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.